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의 취득 등에 필요한 시험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952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취득 등에 필요한 시험의 면제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헬리콥터 형식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 중 실비행훈련 시간 외에 모의비행훈련 시간도 포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단발 왕복발동기 외의 배터리 또는 수소 동력원을 사용하는 전기모터를 장착한 경우에도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이 가능토록 경량항공기 분류기준 보완(안 제4조제4호)
- 나. 항공기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제작자(항공기의 제작자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한정심사에 필요한 학과·실기시험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89조제4항 신설, 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 다. 「항공안전법」 제40조제4항 개정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하는 방법에 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서식에 조건 또는 제한사항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2조제3항,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45호서식)
- 라. 건강증진활동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강증진활동계획과 건강증진활동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하여금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6조의2 신설)
- 마. 그간 항공안전법(제78조)에서 부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불명확했던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에 관한 내

- 용을 위임 근거가 유사한 조항(제84조)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자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신설함(안 제221조제4항 개정 및 제247조의2 신설)
- 바. 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 변경사유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부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처리기간과 검사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62조, 별지 제95호 서식)
- 사. 헬리콥터 형식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 중 실비행훈련 시간 외에 모의비행훈련 시간을 포함시키고, 이에 맞게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조종사 형식 한정 추가과정 지정기준) 중 헬리콥터 실기교육 내용에 모의비행훈련 시간을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별표 12 제5호가목2))
- 아. 그간 부령에서 정하지 않고, 항공정보간행물(AIP)로만 고시·운영하고 있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중 주의공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23)
- 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운항증명 효력정지 기간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3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단발(單發) 왕복발동기 또는 전기모터(배터리 또는 수소 동력원 사용)를 장착할 것

제89조제2항 단서 중 “외국정부”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로,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를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해당 항공기의 제작자(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제92조제3항 본문 중 “자격증명별”을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별표 8”을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별표 8”로 한다.

제93조제5항 중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항공업무 범위를 한정하여”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41조의2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의 연간 목표
2. 전담 조직·인력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
3. 항공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건강증진활동 시행 내용
4. 건강증진활동 시행에 대한 평가방안 및 계획의 재검토 절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자등은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과 전 년도의 건강증진활동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은 소속 사업자등이 시행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한국항공우주 의학협회 또는 항공전문의사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한국항공우주 의학협회 또

는 항공전문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등이 부담한다.

⑤ 사업자들은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건강증진활동 전담인력이 건강증진활동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사업자들이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 시행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2. 건강증진활동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3.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 관리·제공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들의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보고, 건강증진활동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1조제4항 중 “지정절차,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을 “지정절차”로 한다.

제2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7조의2(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등의 설정 등)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절차 및 접근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법 제9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는 운항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법 제90조제5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운항개시예정일 45일 전까지, 법 제90조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및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자격 증명 한정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의 응시경력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89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제작자(항공기 제작자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의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별표 4 제1호나목의 자격 증명 한정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의 응시경력란 나)(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헬리콥터의 경우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은 사람. 다만, 모의비행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조종교육증명란의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란의 응시경력 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89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제작자(항공기 제작자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의 해당 항공기 종류·등급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

별표 4 제1호나목의 조종교육증명란의 초급(활공기)란의 응시경력 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89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제작자(항공기 제작자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의 활공기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

별표 4 제1호나목의 계기비행증명란의 응시경력 다) 중 (1)·(2)를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제작자(항공기 제작자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의 해당 항공기 종류에 관한 계기비행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다음의 계기비행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별표 4 제2호나목의 조종교육증명란의 응시경력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제89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

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제작자(항공기 제작자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하
다)의 경량항공기 종류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전문교육
훈련을 이수한 사람

별표 12 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기교육: 과목별 배분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구분	과목	동승비행시간	
		제트발동기	왕복발동기
비행기	1. 모의비행훈련	20	16
	2. 실제비행훈련	2	2
	3.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2
	계	24	20
헬리 콥터	1. 모의비행훈련	15	
	2. 실제비행훈련	5	
	3.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계	22	

별표 12 제5호가목1)(2)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교: 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형식 한정 변경에 필요한 실기교육시
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훈련규정에서 정한 실기교육시간
이상으로 운영 가능

별표 23 제2호 주의공역의 경계구역란 다음에 주의공역의 초경량비행장
치 비행구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으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
--------------	---

별표 32 제2호 중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를 “제7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3 제1호 가목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란 가목 중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11조제1항제2호”를 “제7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4 제1호가목2) 중 “누목”을 “두목”로 하고, 같은 목 3) 중 “제2호수목1)”을 “제2호우목1)”로 하며, 같은 표 제2호토목부터 누목까지를 각각 포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 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39호의2 및 제95조제1항·제2항	운항증명 취소	운항증명 취소	운항증명 취소
---	--------------------------------	------------	------------	------------

별표 34 제2호두목부터 우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주목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104-3”을 “104-4”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대한민국 (Approving National Aviation Authority/Country): Republic of Korea/ MOLIT		2. 부품 등 감항승인서 AIRWORTHINESS APPROVAL TAG		3. 추적번호(Tracking No)	
4. 명칭 및 주소(Organization Name and Address)				5. 작업지시, 계약 또는 송장번호 (Work Order, Contract or Invoice No)	
6. 품목 (Item)	7. 품명 (Description)	8. 부품번호 (Part No.)	9. 수량 (Quantity)	10. 일련번호/배치번호 (Serial No./Batch No.)	11. 상태/작업 (Status/Work)
12. 비 고(Remarks)					
13a. 위의 품목은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Certifies the items identified above were manufactured in conformity to:) ☐ 인가된 설계자료에 일치하며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Approved design data and are in a condition for safe operation) ☐ 제12호란에 명시한 인가되지 않은 설계자료에 따름 (Non-approved design data specified in Block 12)			14a. ☐ 항공안전법 제32조에 따른 정비확인(Aviation Safety Act Article 32 Return to Service) ☐ 제12호란에 명시한 다른 법규에 따른 정비확인 (Other Regulation specified in Block 12) 제11호란 및 제12호란(또는 붙임)에 명시된 정비 작업이 항공안전법 제32조에 따라 항공에 사용을 승인함. 다만, 제12호란에 명시한 다른 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Certifies tha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Block 12, the work specified Block 11 and described in Block 12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viation Safety Act Article 32 and in respect to the work, the items are approved for return to service]		
13b. 승인자 서명 (Authorized Signature)		13c. 인가/승인번호 (MOLIT Authorization No.)		14b. 승인자 서명 (Authorized Signature)	
				14c. 인가/인증번호 (MOLIT Approval/Certificate No.)	
13d. 성명(Name)		13e. 일자(Date)		14d. 성명(Name)	
				14e. 일자(Date)	
User / Installer Responsibilities					
이 인증서는 부품·구성품 또는 조립품의 장착을 자동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장착자는 감항당국의 법규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existence of this document alone does not automatically constitute authority to install the part /component/assembly. Where the user/installer performs work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regulations of an airworthiness authority different that the airworthiness authority of the country specified in Block 1, it is essential that the user/installer ensures that his/her airworthiness authority accepts parts/components/assemblies from the airworthiness authority of the country specified in Block 1. Statements in Blocks 13a and 14a do not constitute installations certification. In all cases, aircraft maintenance records must contain an installation certification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regulations by the user/installer before the aircraft may be flown.					

210mm×297mm[백상지(120g/㎡)]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발급번호 No.	
항공신체검사증명서 AIRMAN MEDICAL CERTIFICATE				
제 중 Class	성 명 Name	(한글) (영문)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유효기간 Valid date				
조건 또는 제한 유·무 Limitations Check [] 있음 Yes [] 없음 No				
조건 또는 제한사항 Limitations				
「항공안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he/she has met medical standards prescribed in Article 40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93-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ct for this class of Medical Certificate.				
검사일 Date of Examination			지정번호 Examiner's Serial No.	
항공전문의사 Examiner	성 명 Name	(한글) (영문)		
	서 명 Signature			
신청인 서명 Airman's Signature				

80mm×49mm[백상지(80g/㎡)]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새로운 형식 항공기 도입은 15일, 운항증명 효력정지 후 운항 재개,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은 45일, 노선 추가 개설은 5일
신청인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운항증명번호				
변경사유	선택란	변경사항		변경예정일 (해당되는 란에만 기재)
	☐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 후 운항 재개		
	☐	노선 추가 개설		
	☐	항공운송사업 양도·양수		
	☐	사업 합병		
운항관련	투입기종			
	개시예정일			

「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적합성입증자료 2. 운영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신청서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공통과 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Overflight Permission)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	------	------	----

1.성명 및 국적		2.식별부호 및 형식		3.항행의 경로 및 일시															
국 적 (Nationality)	항 공 사 (Operator)	항공기 식별부 호 (Aircraft -Identification)	항공기 형식 (Aircraft -Type)	영공통과 기간 (Period of overflight)		운항요일 (Days of Operation)							출 발 지 (Departure Aerodrome)	목 적 지 (Destination Airport)	진 입 지 점 (In-Entry Point)	진 입 시 간 (In-Entry Time)	항 공 로 (Airway)	이 탈 지 점 (In-Exit Point)	이 탈 시 간 (In-Exit Time)
				부터 (from)	까지 (to)	M	T	W	T	F	S	S							
						O	U	E	H	R	A	U							

4.운용자 주소 (Operator Address)		
5.항공기 등록부호 (Aircraft Registration Number)		
6.항행의 목적 (Purpose of flight)		
7.기장 및 승무원의 성명 (Name of the Captain)		
8.여객의 성명 및 국적 (Name & Nationality of Passengers)		
9.적하의 명세(Freight List) -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 탑재여부(Dangerous Goods) [] 예(Yes) [] 아니오(No)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4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공통과 허가를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0-1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274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I hereby submit [application for an overflying permission](#).

년 월 일(Date of application)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Attention : Administrator of [Air Traffic Management Office](#))

첨부서류	제9호(적하의 명세)의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을 탑재한 경우 상세 화물명세서 1부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If Dangerous Goods are boarded, Submit a detail Freight List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공통과 허가 변경신청서 (Application for Change of Overflight Permission)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 s) 2일 (2Days)
------	------	------------------------------------

	1. 성명 및 국적		2. 식별부호 및 형식		3. 항행의 경로 및 일시															
	국 적 (Nati onali ty)	항 공 사 (Opera -or)	항공기 식 부 호 (Aircraft- identifi cation)	항공기 형 식 (Aircraft- Type)	영공통과 기 간 (Period of overflight)		운항요일							출 발 지 (De part ure Air- por t)	목 적 지 (Des tina tion Air- por t)	진 입 지 점 (In- cheo n FI R En try Poin t)	진 입 시 간 (In- che on FIR Entr y Tim e)	항 공 로 (Air- way)	이 탈 지 점 (In- che on FIR Exit Poin t)	이 탈 시 간 (In- cheo n FIR Exit Time)
(Days of Operation)																				
					- 부 터 from	- 까 지 to	M O N	T U E	W E D	T H U	F R I	S A T	S U N							
						1	2	3	4	5	6	7								
기 존 (ORI GINA L)																				
변 경 (CH A-N GE)																				

4. 운전자 주소(Operator Address):
5. 항공기 등록부호(Aircraft Registration Number):
6. 항행의 목적(Purpose of flight):
7. 기장 및 승무원의 성명(Name of the Captain): (to be submitted by each flight plan)
8. 여객의 성명 및 국적(Name & Nationality of Passengers):
9. 적하의 명세(Freight List):
 -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 탑재여부(Dangerous Goods): 예(Yes) [], 아니오(No) []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5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공통과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0-1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275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Act, I hereby submit [application for change of overflying permission](#).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Attention: Administrator of [Air Traffic Management Office](#)

첨부서류	제9호(화물의 명세)의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을 탑재한 경우 상세 화물명세서를 제출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If Dangerous Goods are boarded, Submit a detail Freight List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4. 단발(單發) 왕복발동기 또는 전기모터(배터리 또는 수소동력원 사용)를 장착할 것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9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생략)	제89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교육 이수 후 180	② ----- ----- ----- ----- -----

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생략)

<신 설>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⑦ (생략)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 ④ (생략)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40조제4항 및 이 규칙 제92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항공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하거나 별표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자격증명의 종류별 -----
-----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별표 8-----.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신 설>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

-----.

제96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41조의2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의 연간 목표
 2. 전담 조직·인력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
 3. 항공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건강증진활동 시행 내용
 4. 건강증진활동 시행에 대한 평가방안 및 계획의 재검토 절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사업자등은 매년 건강증진활

동계획과 전 년도의 건강증진활동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은 소속 사업자등이 시행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또는 항공전문 의사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또는 항공전문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등이 부담한다.

⑤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건강증진활동 전담인력이 건강증진활동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사

	<u>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u> <u>1. 건강증진활동 시행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u> <u>2. 건강증진활동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u> <u>3.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 관리·제공</u> <u>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들의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보고, 건강증진활동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제221조(공역의 구분·관리 등)	제221조(공역의 구분·관리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공역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u>지정절차,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u>	④ ----- ----- <u>지정절차</u> ----- -----

설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① 법 제90조제5항에서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2. 새로운 노선을 개설한 경우

3.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4.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② 운항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

제247조의2(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등의 설정 등)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표준출발·도착절차 및 접근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삭 제>

① -----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
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안전운항체계 변
경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
경에 대한 입증자료(이하 이 조
에서 “안전적합성입증자료”라
한다)와 별지 제93호서식의 운
영기준 변경신청서(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5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
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
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
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

-- 첨부하여 법 제90조제5항제
1호의 경우에는 운항개시예정
일 15일 전까지, 법 제90조제5
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우에는 운항개시예정일 45일 전
까지, 법 제90조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

1. ~ 11.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

-----.

③ -----
----- 제2항-----

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59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운영기준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운항체계의 변경에 따른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 ④ ----- ----- 제2항 ----- ----- ----- ----- ----- ----- ----- ----- -----.
--	---